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94호 2023. 5. 12.(금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561호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562호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하동군 조례 제2563호 하동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16
- 하동군 조례 제2564호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19
- 하동군 조례 제2565호 하동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23
- 하동군 조례 제2566호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운영 관리 조례 27
- 하동군 조례 제2567호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31
- 하동군 조례 제2568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3-104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39
- 하동군 고시 제2023-106호 하천점용 허가고시 42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2023-714호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43

일 반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23-695호 2023/2024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결정사항 공고 49
- 하동군 공고 제2023-698호 보상계획 공고(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54
- 하동군 공고 제2023-705호 약양중산사구하천로정비사업실시관리용역참가인입부중복도의견수렴공고 67
- 하동군 공고 제2023-727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69
- 하동군 금남면 공고 제2023-13호 2023년 가시권 덩굴류 제거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 70

회									
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2561호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동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동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하동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 회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탈퇴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전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전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대응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3조(수당 등) ① 군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료 지급기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1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등 범죄 예방 사업

제15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6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62 호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는 담당부서를”을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부서는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부서”를 “시스템운영부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답변에 응해야”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

를」에 따라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상”을 “보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포상하는”을 “지급하는 시상금이나 시상품의”로 한다.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 제안제도, 우수시책 홍보, 홍보행사 등에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경우

제5장(제15조)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운영부서”를 각각 “시스템운영부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1. ~ 3. (생략)</p> <p>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하동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p> <p>5. ~ 8. (생략)</p>	<p>제2조(정의) 1. ~ 3. (현행과 같음)</p> <p>4.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 ----- -----.</p> <p>5. ~ 8. (현행과 같음)</p>
<p>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p> <p>① ~ ② (생략)</p> <p>1. ~ 4. (생략)</p> <p>5. <u>전자우편 ID 이용</u></p> <p>6.·7. (생략)</p> <p>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는 정보화 담당부서로 하고, <u>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는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 할 수 있다.</u></p> <p>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부서의</p>	<p>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6.·7. (현행과 같음)</p> <p>③ ----- ----- ----- --- <u>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부서</u>는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준하여 ----- -----.</p> <p>④ ----- ----- -----</p>

장(이하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장비 및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 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생략)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대

-----시스템운영부서-----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

②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민원

한 빠른 시간 내 답변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이용자 참여 행사) ① 군수는 홈페이지 및 SNS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제15조(전자우편서비스 제공)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

제14조(이용자 참여 행사)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 제안제도, 우수시책홍보, 홍보행사 등에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경우

② -----

----- 보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

③ ----- 지급하는 시상금이나 시상품의 -----

-----.

<삭 제>

<삭 제>

② 군수는 전자우편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

-----.

② 시스템운영부서-----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63 호

하동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

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거지원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
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봉사 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동군 자원봉사센터, 관련 사회단체 및 기관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2564호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사망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75세 이상 노인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각 목의 연고자는 사망자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영장례의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65호

하동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상담관의 위촉)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임기)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하동군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1.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등 홍보
3.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5조(근무)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② 상담관은 본청 민원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지역 민원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민원상담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해촉)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상담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실비 등 지급) 군수는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민 원 상 담 일 지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20 . . . (요 일)

민원상담관:

(서명)

분야별 민원상담 건수(금일/누계)						
합계	건축, 개발행위	토지 지가	건설·교통 도로·하천	지역 경제	농업 분야	기타
주요 민원 상담 내용						
개선 · 건의 사항						
그 밖의 사항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운영 관리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66 호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해 안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교육장의 명칭은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하동군 하동읍 중앙2길 6-5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교육장은 군민의 재난 안전사고 대처 역량강화와 안전교육, 안전문화 강화로 군민의 안전을 통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한다.

제4조(사용료) 교육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5조(휴일 및 운영시간) ① 교육장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2. 시설의 유지·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

② 교육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장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2. 주취자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4.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동군 소방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육장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운영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교육장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의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규정,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군수는 교육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의 재산·물품 및 시설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하동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감독) 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위탁운영 신청서

수탁운영 기 간	년	월	일	(개월)
	년	월	일	
수탁목적				
신청자	단체(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사무소소재지)	전 화		

위와 같이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고자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및 성명 :

주소 :

하 동 군 수 귀 하

- 첨부서류 1. 위탁운영 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2.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공공기관 증명서)
 3. 안전사업 실적 및 이와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송 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하동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 내 각종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동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하동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 산업재해 예방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
4. 사업장 안전수칙 및 안전문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홍보
5. 사업장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동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

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점검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천



하동군 조례 제 2568 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목부터 나목까지”를 “가목 및 나목에”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라. 영 제2조제17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간사는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

3 및 영 제5조의8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① ~ ⑤ (생 략)</p> <p>⑥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4조(구성) ① ~ ⑤ (현행과 같 음)</p> <p>⑥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으며, -----</u> ----- --.</p>
<p>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 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p> <p>1. ~ 7. (생 략)</p> <p>8. <u>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에 관한 사항</u></p> <p>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u>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u></p> <p>나. (생 략)</p> <p>다. <u>가목부터 나목까지</u> 해당</p>	<p>제6조(기능) ① -----</p> <p>-----</p> <p>-----</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 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이란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u></p> <p>가. <u>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을 건설하는 단지</u></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u>가목 및 나목에 -----</u></p>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
상인 건축물

<신 설>

9. · 10. (생 략)

② · ③ (생 략)

제9조(간사) ① · ② (생 략)

<신 설>

라. 영 제2조제17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9.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간사는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
는 법 제4조의3 및 영 제5조의8
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
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
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하동군 고시 제2023-104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성과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 5 . 2.

하 동 군 수

기준점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표고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 재질	비 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Y					
지적도근점	W4710	35-01-15.2082	127-47-27.5422	중부	269698.54	272189.91	9.038	고전면 신월리 104-2	2023.04.0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11	35-01-18.5272	127-47-23.6089	중부	269800.03	272089.38	6.687	고전면 신월리 136-2	2023.04.0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12	35-01-18.6292	127-47-27.7298	중부	269804.00	272193.83	18.597	고전면 신월리 177	2023.04.0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13	34-58-46.5098	127-49-48.1337	중부	265144.90	275792.30	17.469	금남면 진정리 888	2023.04.0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14	34-58-35.8109	127-49-44.7225	중부	264814.46	275708.51	50.566	금남면 진정리 226-2	2023.04.0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15	34-58-35.3471	127-49-49.9824	중부	264801.28	275842.05	42.717	금남면 진정리 산7-2	2023.04.04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16	35-11-59.1522	127-49-13.1430	중부	289565.51	274703.69	268.693	옥종면 궁항리 산72	2023.04.0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17	35-12-01.1765	127-49-10.0130	중부	289627.24	274624.00	270.998	옥종면 궁항리 산72-1	2023.04.0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18	35-12-01.1757	127-49-07.4941	중부	289626.69	274560.28	290.230	옥종면 궁항리 1317	2023.04.04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19	35-08-13.4905	127-42-12.4845	중부	282529.39	264111.56	65.572	악양면 미점리 64-1	2023.04.0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20	35-08-11.8835	127-42-10.1719	중부	282479.45	264053.37	67.632	악양면 미점리 210	2023.04.0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21	35-08-14.4735	127-42-08.6314	중부	282559.00	264013.80	51.588	악양면 미점리 194-2	2023.04.0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22	34-57-50.9423	127-46-20.4424	중부	263390.20	270537.45	5.877	금성면 갈사리 925-7	2023.04.0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23	34-57-48.5205	127-46-22.6117	중부	263315.99	270593.06	7.029	금성면 갈사리 610-2	2023.04.0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24	34-57-44.2373	127-46-19.8379	중부	263183.45	270523.71	5.654	금성면 갈사리 925-6 인근	2023.04.0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25	35-03-24.2420	127-54-45.3257	중부	273769.85	283252.38	73.432	진교면 고이리 산125-4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26	35-03-20.2220	127-54-44.3707	중부	273645.74	283229.31	70.317	진교면 고이리 438-1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27	35-03-19.9460	127-54-58.4912	중부	273640.51	283587.23	22.312	진교면 고이리 422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28	35-03-13.2121	127-54-56.2416	중부	273432.46	283532.12	20.004	진교면 고이리 419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29	35-03-21.4887	127-53-37.8807	중부	273669.52	281543.99	58.138	진교면 관곡리 539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30	35-03-19.4758	127-53-37.5863	중부	273607.42	281537.08	52.943	진교면 관곡리 526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31	35-03-13.4095	127-53-34.7555	중부	273419.82	281467.02	39.913	진교면 관곡리 491-3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32	35-14-22.2132	127-43-12.4627	중부	293903.77	265547.67	598.314	청암면 목계리 1505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33	35-14-21.4223	127-43-09.2027	중부	293878.80	265465.42	600.257	청암면 목계리 1749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34	35-14-22.4196	127-43-08.5841	중부	293909.42	265449.56	605.301	청암면 목계리 1510-3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35	35-11-35.9758	127-42-44.9294	중부	288775.52	264888.25	211.397	약양면 등촌리 314-3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36	35-11-34.7671	127-42-43.6100	중부	288738.03	264855.14	211.644	약양면 동매리 655-2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37	35-11-31.2404	127-42-45.7156	중부	288629.72	264909.19	201.556	약양면 동매리 662-4	2023.04.1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38	35-11-24.1801	127-49-05.8383	중부	288486.19	274528.29	265.109	옥종면 회신리 856-8	2023.04.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39	35-11-23.8686	127-49-08.3079	중부	288477.10	274590.34	255.991	옥종면 회신리 907	2023.04.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40	35-11-23.5114	127-49-10.3027	중부	288466.51	274640.90	245.028	옥종면 회신리 755-1	2023.04.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41	35-06-52.8448	127-42-44.6245	중부	280049.81	264943.01	183.328	하동읍 흥룡리 442	2023.04.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42	35-06-53.4404	127-42-46.3944	중부	280068.49	264987.70	192.474	하동읍 흥룡리 산137-2	2023.04.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43	35-06-55.1095	127-42-48.2008	중부	280120.25	265033.07	208.921	하동읍 흥룡리 439-1	2023.04.1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44	35-07-44.0446	127-45-29.3614	중부	281658.50	269102.64	124.569	적량면 서리 444	2023.04.2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45	35-07-49.1143	127-45-24.4197	중부	281813.79	268976.34	137.226	적량면 서리 72-1	2023.04.2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46	35-07-53.4886	127-45-29.3834	중부	281949.56	269100.98	143.604	적량면 서리 68-11	2023.04.2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47	35-16-27.4452	127-39-47.1796	중부	297727.12	260331.44	437.224	화개면 대성리 산96-3	2023.04.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48	35-16-25.4461	127-39-47.0433	중부	297665.49	260328.41	424.261	화개면 대성리 1938-4	2023.04.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49	35-16-23.5716	127-39-45.8985	중부	297607.52	260299.86	411.191	화개면 대성리 298-2	2023.04.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50	35-11-59.9428	127-43-05.0834	중부	289517.82	265392.79	257.576	약양면 등촌리 610-2	2023.04.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51	35-12-01.1199	127-43-05.7842	중부	289554.22	265410.25	265.909	약양면 등촌리 610-1	2023.04.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52	35-12-02.4394	127-43-07.5462	중부	289595.21	265454.53	275.520	약양면 등촌리 941	2023.04.1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53	35-10-01.7610	127-41-40.9740	중부	285860.51	263290.55	193.139	약양면 입석리 350-5	2023.04.2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54	35-09-58.9225	127-41-40.7283	중부	285772.99	263284.94	172.438	약양면 입석리 산14-5	2023.04.2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55	35-09-56.8167	127-41-38.9790	중부	285707.78	263241.12	164.915	약양면 입석리 348-1	2023.04.26	맨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56	35-02-38.2975	127-50-29.7826	중부	272296.97	276788.52	36.333	양보면 운암리 1038	2023.04.2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57	35-02-39.8654	127-50-31.7423	중부	272345.71	276837.78	34.476	양보면 운암리 824-2	2023.04.2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58	35-02-42.6882	127-50-34.8850	중부	272433.38	276916.70	27.875	양보면 운암리 149-2	2023.04.2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59	35-08-23.7385	127-49-56.9614	중부	282935.94	275867.73	172.342	횡천면 전대리 355	2023.04.2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60	35-08-22.5220	127-49-53.9223	중부	282897.80	275791.11	162.241	횡천면 전대리 348-3	2023.04.2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61	35-08-20.6630	127-49-49.9028	중부	282839.66	275689.83	146.499	횡천면 전대리 산17	2023.04.28	철재	세계측지계

★ 측량성과 보관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하동군 제2023 - 106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05. 09.

하 동 군 수

1. 허가번호 : 2023-28호
2. 하천의 명칭 : 화개천
2. 허가연월일 : 2023.05.09.
3. 점용자 : 하동군수(농산물유통과)
4. 점용의 목적 : 경관차발 관광자원화 사업 야외차자리(방갈로) 설치
(토지의 점용)
5. 점용위치 : 화개면 용강리 1325(인접: 45)
6. 점용면적 : 23㎡
7. 점용허가 기간 : 2023.05.09.~ 영구

하동군 공고 제2023-714호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 이유 :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감소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귀향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귀향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귀향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귀향인 지원사업의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하동군 (참조 : 지역활력추진단, 전화 055-880-2427, FAX 055-880-7159, e-mail: somsomi@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귀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향인”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10년 이상 군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
2.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귀향인의 정주여건 조성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5년마다 하동군 귀향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향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귀향인 지원 사업 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3. 귀향인의 주거 및 생활 지원 방안
4. 귀향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5.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귀향 홍보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귀향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경우 귀향인,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사업
2. 귀향인에 대한 주택 신축 및 개량 지원사업
3. 귀향인의 농지 구입 및 임대 지원사업
4.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사업
5.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하동군민 간 교류·협력 지원사업
6. 귀향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7. 귀향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귀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귀향인 지원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동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하동군 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3 - 695호

공 고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23/2024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일

하 동 군 수

1. 2023/2024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 결정사항

1) 승인내역

어업별	유형별	승인신청		검 토 결 과					
				승 인		조건부		불승인	
		건수	면적 (ha)	건수	면적 (ha)	건수	면적 (ha)	건수	면적 (ha)
계		1	10.5	1	10.5	-	-	-	-
양식업	신규개발	-	-	-	-	-	-	-	-
	재 개발	1	10.5	1	10.5	-	-	-	-
	대체개발	-	-	-	-	-	-	-	-

2) 승인조건

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시 부여한 조건 등이 있을 경우 그 조건 이행 후 면허 처분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되지 않은 수면은 양식업면허를 처분할 수 없다.

나. 승인된 수면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식업면허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면허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다. 승인된 수면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타 어업과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우는 그 민원 및 수산 관련 분쟁을 해소한 후 양식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 승인된 수면에 대해서는 여객선 등 선박의 항로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양식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마. 대체개발 시 합산 분할 어장의 어업권자 동의 완료한 후 양식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

바. 양식장 개발 시 기존 어장 및 개발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어장청소 완료를 확인한 후 양식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사. 국립수산과학원(소속 연구소 포함) 또는 도 수산기술 지도·보급기관에서 실시한 적지조사 결과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기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입식 밀도 조절 및 양식장 환경개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양식장 개발 시 해당 품목에 대한 양식재해보험상품이 개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면허처분하여야 하며, 어류등양식(가두리식)은 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어업재해가 발생한 양식장은 재해대책명령(조기출하 및 어장이동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면허 처분하여야 한다.

자. 승인된 개발수면에 대한 면허처분은 우선 순위자 결정 결과에 따라 면적 및 수면의 한계, 어장간의 거리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면허 처분하여야 한다.

차.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어장경계구역 야간 표시시설의 설치방법 및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카. 협동양식업은 「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어장수심한계를 준수하여 신규 재개발하여야 하며, 재개발 시 기존 면허구역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맞도록 어장실측, 양식어장과의 중첩, 어항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식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

타. 양식업면허 처분 시에는 「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 제8조제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 위(가~타) 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업법 등 관련 법

령과 2023/2024년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양식업면허를 처분하여야 한다.

※ 승인된 개발수면에 대하여는 상기 조건이 충족될 때 양식업(어업)면허 처분

2. 열람기간 : 2023년 5월 3일 ~ 2023년 6월 1일 (30일간)

3. 장 소 : 하동군청 해양수산과(어업생산담당)

4.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신청

가. 자 격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양식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단, 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단체)

나. 신청기간 및 장소 :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 1)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수산기술자만 해당)
-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 면허증 및 양식업 허가증 사본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
- 3)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
- 4)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만 해당)
- 5) 여권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라.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 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해양수산과(☎055-880-2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2024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1부. 끝.

2023/2024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 재개발(양식업) 】

순번	시군	면허 번호	어업의 명 칭	양식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현어장 면적(ha)	재개발 면적(ha)	승인결과
소계	1건						10.50	10.50	승인 1건
1	하동군	하동양식 제23호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피조개	금남 중평	10.50	10.50	승인

하동군 공고 제2023-698호

보 상 계 획 열 램 공 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을 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4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구분	명 칭	하천명	위 치			목 적	공사개요	공 사 기 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사 업 명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악양천	하동	악양	평사봉대 축지 입석 신대 미점 신성	20.7. ~ 8.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재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하천공사	-제방보강(우안) L=2.226km -축제 및 보축 (좌안) L=2.259km -부대공 1식 등	2022.04. ~ 2023.12. (20개월간)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2.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가. 토 지 : 붙임조서 참조

나. 물 건 : 붙임조서 참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 및 하동군 홈페이지 게재하며 물건조서의 경우 중앙 일간신문 공고 생략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2년 5월 4일 ~ 5월 19일

※ 열람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 공휴일은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 등 확인 및 누락여부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확인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4.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 평가 후 별도 통보 예정

나.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감정 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

(보상금 지급 : 이전등기 후 계좌입금 조치)

다.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보상금 산정→보상협의→소유권 이전후 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불성립 시)→보상금 공탁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 등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별통지 예정

6.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나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055-880-2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보상계획에 따른 이의 신청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이의신청 내 용		
4. 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 . .</p> <p>이의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하동군수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지 장 물 조 서

사업명 : 악양천 재해복구사업

일련 연번	소재지 (하동군)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소(실제거소)	
1	악양면 축지리	1023-2	녹차나무	-	56.0	m ²	김*숙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	"	"	매실나무	R25	2	주	"	"	
3	"	"	산초나무	R12	1	주	"	"	
4	"	"	산초나무	R6	1	주	"	"	
5	악양면 미접리	294-5	축사#1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4*5	20.0	m ²	이*인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6	"	"	축사#2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6*9	54.0	m ²	"	"	
7	"	"	계사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9*2.6+2*1 1	45.4	m ²	"	"	
8	"	"	창고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6*8	48.0	m ²	"	"	
9	"	"	바닥포장	콘크리트	90.0	m ²	"	"	
10	"	"	대문#1 (내부)	메쉬 H1.5L2	1	식	"	"	
11	"	"	대문#2 (내부)	알미늄 H1.2L1.5	1	식	"	"	
12	"	"	대문#3 (외부)	메쉬 외 H2L3	1	식	"	"	
13	"	"	울타리#1 (내부)	H1.8 L5	1	식	"	"	
14	"	"	울타리#2 (외부)	철파이프조 강판 H1.5L8	1	식	"	"	
15	"	"	동산이전 비		1	식	"	"	
16	"	"	한우	임신우	5	두	"	"	
17	"	"	거위		4	두	"	"	
18	"	"	개		3	두	"	"	
19	악양면 미접리	809	축사#1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5*11	55.0	m ²	이*인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0	"	"	축사#2	목조 2*2	4.0	m ²	"	"	
21	"	"	염소	대8,중5,소 3	16	두	"	"	
22	악양면 미접리	294-7 외	컨테이너	3*6	1	식	이*인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3	"	"	연못	울타리 포함 5*18	1	식	"	"	
24	"	"	감나무	R10	73	주	"	"	

25	"	"	감나무	R5	1	주	"	"
26	"	"	감나무	R20	2	주	"	"
27	"	"	주목	R6	1	주	"	"
28	"	"	모과나무	R6	1	주	"	"
29	"	"	가죽나무	R3	1	주	"	"
30	"	"	감나무	R20	16	주	"	"
31	"	"	동백나무	R12(두절)	1	주	"	"
32	"	"	매실나무	R10(두절)	1	주	"	"
33	"	"	매실나무	R20	6	주	"	"
34	"	"	매실나무	R10	16	주	"	"
35	"	"	자두나무	R20	1	주	"	"
36	"	"	편백나무	R20	1	주	"	"
37	"	"	대추나무	R3	4	주	"	"
38	"	"	음나무	R3	1	주	"	"
39	"	"	두릅나무	R3	25	주	"	"
40	"	"	헛개나무	R7	1	주	"	"
41	악양면 신대리	399-1 399-2 399-3	복숭아	R25	1	주	손*춘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소축길
42	"	"	단풍나무	R5	1	주	"	"
43	"	"	감나무	R15~20	125	주	"	"
44	"	"	감나무	R7	13	주	"	"

<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 입 면 적 (㎡)	지분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군	면	리	지번					등기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55-4	도로	140	140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김*갑			
2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55-1	하천	52	52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2가 77	김*근			
14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49-5	하천	243	243		하동군 하동을 섬진강대로	전*석	국,하동군		압류
18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49-1	하천	18	18		하동군 하동을 섬진강대로	전*석	국,하동군		압류
24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47-6	재방	314	314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김*덕			
27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47-3	재방	377	377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김*수			
50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32-3	구거	674	674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박*하			
51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31-3	하천	367	367			미등기1	소*두	미점리 340	토지대장상 소유자
52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31-2	하천	334	334			미등기2	소*두	미점리 340	토지대장상 소유자
53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31-1	하천	291	291			미등기3	수*두	미점리 340	토지대장상 소유자
54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30	전	272	272			국(기획재정부)			
59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30-3	전	126	126			국(기획재정부)			
60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30-2	전	539	539			국(기획재정부)			
64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28-6	답	284	284	142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전*덕			
64-1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28-6	답	284	284	142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김*열			
66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28-4	답	661	661	330.5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전*덕			
66-1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28-4	답	661	661	330.5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김*열			
68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27-3	답	83	83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박*하			
75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756-5	답	116	116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황*석			
97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750	하천	138	138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강*주			
108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744-1	전	694	694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이*석			
112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743-1	전	850	850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신*수			
141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732	하천	249	249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이*룡			
143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731-4	전	60	60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남*희			
144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731-3	전	714	714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남*희			
149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730-3	전	598	598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최*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지분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군	면	리	지번					등기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153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729-3	전	1,322	1,322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강*욱			
157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727-3	답	7	7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안*이			
159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718-3	전	331	331			국(기획재정부)			
162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74-5	제방	46	46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이*조			
163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74-4	제방	340	340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이*조	서울특별시양천구		압류(세무2과세 인수일련-6)
165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73-4	제방	7	7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이*문			
166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73-3	제방	942	942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이*문			
169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72-2	제방	132	132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남*희			
170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72-1	제방	162	162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남*희			
173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71-1	구거	26	26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이*달			
174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70	하천	714	714	357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박*			
174-1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70	하천	714	714	357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박*석			
176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68	하천	643	643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안*재			
184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67-3	하천	202	202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안*달			
188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66	하천	674	674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송*정길			
190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65-6	전	3	3			국(기획재정부)			
191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65-5	전	271	271			국(기획재정부)			
192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65-4	전	188	188			국(기획재정부)			
193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65-2	제방	1,471	1,471	736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송*을순			
193-1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65-2	제방	1,471	1,471	736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전*소근			
194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65-1	하천	1,489	1,489	745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송*을순			
194-1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65-1	하천	1,489	1,489	745	통영시 한실7길 13,	전*기			
195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64-3	제방	63	63			미등기4	총*업	전남 광양군 다 압면 고사리 598	토지대장상 소유자
196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64-2	제방	1,392	1,392			미등기5	총*업	전남 광양군 다 압면 고사리 598	토지대장상 소유자
197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64-1	제방	50	50			미등기6	총*업	전남 광양군 다 압면 고사리 598	토지대장상 소유자
199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63-3	하천	238	238			미등기7	이*석	화계면 부춘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200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63-2	제방	1,213	1,213			미등기8	이*석	화계면 부춘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편 입 면적	지분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군	면	리	지번					(㎡)	(㎡)	등기주소	성명	성명
201	하동군	막양면	봉대리	663-1	하천	205	205		미등기9	이*석	화개면 부춘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202	하동군	막양면	봉대리	662	하천	201	201	하동군 막양면 신대리	최*진				
203	하동군	막양면	봉대리	662-1	하천	1,220	1,220	하동군 막양면 신대리	최*진				
204	하동군	막양면	봉대리	661	하천	134	134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서*길성				
205	하동군	막양면	봉대리	661-1	하천	1,397	1,397		미등기10	서*길성	축지리 66	토지대장상 소유자	
206	하동군	막양면	봉대리	660	하천	284	284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안신*갑				
207	하동군	막양면	봉대리	659-3	하천	360	360		미등기11	방*석	축지리 401	토지대장상 소유자	
208	하동군	막양면	봉대리	659-2	제방	569	569		미등기12	방*석	축지리 401	토지대장상 소유자	
209	하동군	막양면	봉대리	659-1	제방	20	20		미등기13	방*석	축지리 401	토지대장상 소유자	
213	하동군	막양면	봉대리	657-3	전	89	89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손*조				
214	하동군	막양면	봉대리	657-2	제방	152	152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손*조				
217	하동군	막양면	봉대리	655-3	전	212	212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이*도				
218	하동군	막양면	봉대리	655-2	제방	116	116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이*도				
219	하동군	막양면	봉대리	651-4	제방	20	20	하동군 막양면 미점리	윤*철				
220	하동군	막양면	봉대리	651-3	전	69	69	하동군 막양면 미점리	윤*철				
237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1023-2	대	547	23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김*숙	하동새마을금고	하동군 막양면 점서리 267-10	근저당권 지상권	
247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1013-2	임야	569	569		국(기획재정부)				
249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1012	하천	217	217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방*석				
254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1008	임야	325	325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방*석				
256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1007-3	전	89	89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방*준				
257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1007-2	제방	106	106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방*준				
258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1006-3	임야	129	129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백*준				
259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1005-3	제방	185	185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허*용				
260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1005-2	제방	1,253	1,253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허*용				
261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1005-1	제방	93	93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허*용				
262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1004-2	하천	142	142		미등기14	이*기	미점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263	하동군	막양면	축지리	1004-1	제방	198	198		미등기15	이*기	미점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 입 면적 (㎡)	지분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군	면	리	지번					등기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265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1002	하천	377	377		미등기16	정*기	
266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1001	하천	350	35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111,	손*성			
267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1000	하천	182	182			미등기17	신*모		토지대장상 소유자
270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98	하천	165	165		하동군 악양면 미정리	이*기			
271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97	하천	136	136		하동군 하동읍 회심리	여*규			
273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96-2	임야	212	212			국(기획재정부)			
275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95	임야	69	69			국(기획재정부)			
281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90-1	도로	36	36			미등기18	장*용		토지대장상 소유자
284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87-2	도로	473	153			미등기19	김*주	적양면 우계리 2010	토지대장상 소유자
285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86-2	전	1,709	1,709	26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장*무			
286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86-1	도로	13	13			미등기20	이*현	신대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295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81-1	도로	817	237			미등기21	손*권		토지대장상 소유자
297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59-2	도로	390	108		하동군 악양면 비정리	박*규			
299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58-1	도로	102	36			미등기22	방*섭		토지대장상 소유자
301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57-2	도로	324	109			미등기23	문*영	전남 광양군 다 암면 금천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307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54-2	도로	393	4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황*두			
326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41-2	답	334	334			국(기획재정부)			
329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40-3	답	280	280			국(기획재정부)			
331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40-1	답	467	467			국(기획재정부)			
333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38-2	제방	737	737			미등기24	허*범		토지대장상 소유자
334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38-1	하천	658	658			미등기25	허*범		토지대장상 소유자
337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35	전	231	231			국(기획재정부)			
352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33	하천	34	34		하동군 하동읍 회심리	여*규			
353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33-1	하천	158	158			미등기26	여*규	하동읍 회심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359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30-3	하천	69	69		하동군 악양면 미정리	박*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 입 면적 (㎡)	지분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군	면	리	지번					등기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360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30-2	제방	635	635		하동군 악양면 미철리	박*규			
361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30-1	전	136	136			미등기27	박*규	미철리 126	토지대장상 소유자
362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29-2	제방	73	73			미등기28	신*관	미철리 187	토지대장상 소유자
363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29-1	제방	443	443			미등기29	신*관	미철리 187	토지대장상 소유자
364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28	제방	205	205			미등기30	조*승		토지대장상 소유자
365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27-3	답	407	407		국(기획재정부)				
367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26-3	답	288	288			미등기31	허*범		토지대장상 소유자
368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26-1	제방	410	410			미등기32	허*범		토지대장상 소유자
383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22-2	제방	433	433			미등기33	여*규	하동읍 읍내동 439	토지대장상 소유자
384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22-1	하천	922	922			미등기34	여*규	하동읍 읍내동 439	토지대장상 소유자
385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21-3	하천	896	896			미등기35	안*수	신대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386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21-2	하천	1,190	1,190			미등기36	안*수	신대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398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13-1	제방	360	203		진주군 진주읍 본정	박*순			
405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01-4	답	36	36		국(기획재정부)				
406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901-3	답	20	20		국(기획재정부)				
408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885-3	전	139	139			미등기37	이*춘	미철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409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885-2	제방	36	36			미등기38	이*춘		토지대장상 소유자
410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884	제방	274	274			미등기39	장*준		토지대장상 소유자
413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882-2	답	10	10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최*춘			
429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808-2	제방	188	188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이*은			
432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806-3	하천	190	190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장*원			
433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806-2	하천	840	840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장*원			
434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805-2	하천	1,782	1,782			미등기40	장*상		토지대장상 소유자
435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805-1	하천	444	444			미등기41	장*상		토지대장상 소유자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권 입 면 적 (㎡)	지분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군	면	리	지번					등기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436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804	하천	1,557	1,557		미등기42	박*	전북 남원군 수진면 호곡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437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803-2	하천	66	66		미등기43	여*규	하동읍 읍내동 439	토지대장상 소유자	
438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803-1	하천	2,291	2,291		미등기44	여*규	하동읍 읍내동 439	토지대장상 소유자	
439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802-3	제방	1,243	1,243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남*희			
440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802-1	제방	116	116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남*희			
441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801-7	제방	529	497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장*상			
442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801	제방	96	96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장*상			
444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793-1	하천	1,174	1,174			미등기45		토지대장상 소유지	
449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790-3	하천	807	807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장*용			
455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788-6	답	106	106			미등기46	이*환	399	토지대장상 소유지
457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788-2	하천	1,230	1,230			미등기47	박*	전북 남원군 수진면 호곡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472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24-7	제방	387	387			미등기48	송*의승	봉대리 491	토지대장상 소유자
473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24-2	제방	76	76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송*의승			
477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17-3	제방	228	228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김*남			
478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17-1	제방	307	307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김*남			
480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16-3	제방	750	750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이*금			
481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16-1	제방	450	450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이*금			
482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15-1	제방	324	324	108	진주군 진주읍 행정	박*한			
482-1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15-1	제방	324	324	54	진주시 중앙동	박*한			
482-2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15-1	제방	324	324	108	진주군 진주읍 행정	박*용			
482-3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15-1	제방	324	324	54	진주시 중앙동	박*보			
483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14-1	제방	1,064	1,064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정*도			
484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13-1	제방	153	34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이*수용			
485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08-1	제방	1,220	1,220	407	진주군 진주읍 행정	박*한			
485-1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08-1	제방	1,220	1,220	203	진주시 중앙동	박*한			
485-2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08-1	제방	1,220	1,220	407	진주군 진주읍 행정	박*용			
485-3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08-1	제방	1,220	1,220	203	진주시 중앙동	박*보			
486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07-1	제방	840	840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대공*석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 입 면 적 (㎡)	지분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군	면	리	지번					등기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500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411-3	답	1,247	56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옛2길 58,	손*호			
501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411-2	답	1,509	1,50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옛2길 58,	손*호			
507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817	하천	949	949			국(기획재정부)			
513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13-3	도로	324	258		전남 광양군 다압면 고사리	손김*수			
514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13-1	도로	30	30		전남 광양군 다압면 고사리	손김*수			
520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06-1	전	826	826			국(기획재정부)			
526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03	하천	539	539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오*희			
527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03-1	전	545	545			국(기획재정부)			
534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01-1	하천	621	621			국(기획재정부)			
553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294-7	답	835	374	187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이*숙			
553-1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294-7	답	835	374	187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이*인			
554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294-5	답	495	495	248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이*숙			
554-1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294-5	답	495	495	248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이*인			
560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289	전	179	179		하동군 악양면 죽지리	손*백			
570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285	임야	159	159		경산시 중방동 304-1 은호아파트	윤*현			
571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284	답	751	751			국(기획재정부)			
572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284-1	답	720	720			국(기획재정부)			
579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235-3	답	618	618			국(기획재정부)			
580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235-2	답	1,273	1,273			국(기획재정부)			
583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234-2	답	1,438	1,438			국(기획재정부)			
584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234-1	잡종지	1,105	286			국(기획재정부)			
601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52	답	530	530			국(기획재정부)			
602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52-2	답	6	6			국(기획재정부)			
603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52-1	답	697	697			국(기획재정부)			
606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50-2	답	24	24			국(기획재정부)			
607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50-1	답	15	15			국(기획재정부)			
608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50	답	103	103			국(기획재정부)			
609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49	답	1,057	1,057			국(기획재정부)			
610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49-1	답	348	348			국(기획재정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 입 면 적 (㎡)	지분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군	면	리	지번					등기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내용
612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47	답	506	506		국(기획재정부)				
613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47-1	답	720	720		국(기획재정부)				
616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44-6	답	142	142		국(기획재정부)				
618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44-4	답	192	192		하동군 악양면 죽지리	ㄴ이*달			
620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44-2	답	251	251		하동군 악양면 죽지리	ㄴ이*달			
635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13-6	도로	185	32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김*곤			
636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740	잡종지	713	693	231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이*부			
636-1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740	잡종지	713	693	231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손*석			
636-2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740	잡종지	713	693	231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이*오			
641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61-3	대	673	12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노*식	화경악양농업협동조합(악양시점)	하동군 화개면 회개로 26-1	근저당권
644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411-4	답	285	52	26	하동군 악양면 죽지리	ㄴ안*영			
644-1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411-4	답	285	52	26	하동군 악양면 죽지리	ㄴ안*영			
645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411-5	답	1,289	9	5	하동군 악양면 죽지리	ㄴ안*영			
645-1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411-5	답	1,289	9	5	하동군 악양면 죽지리	ㄴ안*영			
646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409-2	답	2,661	627		하동군 악양면 상신대길	박*욱			
650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401-2	답	1,085	723		하동군 악양면 상신대길	여*모			
651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401-3	답	1,860	377		하동군 악양면 신흥길	정*만			
655	하동군	악양면	업석리	124-3	제빙	284	87		하동군 악양면 죽지리	손*환			
657	하동군	악양면	업석리	132-11	구거	242	38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강*민			
658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399-1	답	804	804		하동군 악양면 죽지리	손*환			
659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399-2	답	1,586	1,274		하동군 악양면 죽지리	손*환			
660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399-3	답	1,538	164		하동군 악양면 죽지리	ㄴ손*식			
663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938-3	답	1,400	11		하동군 악양면 죽지리	ㄴ장*무			
664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938-2	답	3,526	1,978		하동군 악양면 정동상신길	임*주	악양농업협동조합	하동군 악양면 침서리 268	근저당권

하동군 공고 제 2023-705호

악양옥종고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의견 수렴 공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545호, 2022.10.04.)의 규정에 따라 「악양옥종고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누락 및 허위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02일

하 동 군 수

1. 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3일간 (2023.05.02.~2023.05.09.)
※ 상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 붙임파일 참조
3. 의견제출방법(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가. 우편 :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298-23
하동군 수도사업과 하수도담당
나. 이메일 : 47593114@korea.kr
4.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보는 하지 않으며,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누락 및 허위사실 등을 확인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하동군 수도사업과 하수도담당(055-880-26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1. 업무중복도 의견수렴공고
2. 업무중복도 공개자료(업체별) (하동군청 홈페이지 참조)
3. 업무중복도 의견서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자료에 대한 의견서

□ 용역명 : 악양옥종고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상자					의견 (평가자료의 오류, 누락 등)
소속	성명	용역명	용역기간	발주처	
의견 제출자		소속			
		성명	(서명)		
		주소			
		연락처			

2023. . .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3-727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 하동군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하동군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23. 5. 9.
 - 제공받는 자 : (주)코나오정보
 - 제공목적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종, 부과대상 차량번호, 부과대상 건물소재지, 납부금액,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환경개선부담금 OCR고지서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알림
 - 공고기간 : 2023. 5. 10. ~ 2023. 5. 26. (17일간)
 -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3. 5. 9.

하 동 군 수

금남면 공고 제2023 - 13호

2023년 가시권 덩굴류 제거반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도로변 가시권 미관을 저해하고 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칩 등 덩굴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2023년 가시권 덩굴류 제거반』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05월 일

금 남 면 장

1. 모집인원 : 1명

- ※ 모집인원 초과 시 면접을 통하여 선발
- ※ 모집인원에 미달 되더라도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모집방법 : 공개모집

3. 접수기간 : 2023. 05. 11.(목) ~ 5. 19.(금) 09:00 ~ 18:00

4. 접수방법 : 방문접수(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치 않음)

5. 접수장소 : 금남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6. 담당업무

- 주요도로변 가시권 덩굴류 및 잡목 제거
- 소공원 덩굴류 및 잡목제거
- 기타 가로변 환경 정비
- 위 항 업무 외 면장의 업무지시에 따른 기타업무 수행

7. 응시자격

- 가. 모집공고일 현재 하동군 금남면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고 있는 자
-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다. 개인 예초기 및 트럭 소유자 우대
- 라. 응시연령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 마. 상시근무 가능자(겸직 불가)

8. 응시자격의 제한

- 가. 칩 등 덩굴류 제거작업을 위한 작업과 작업도구 사용에 지장이 있는 자
- 나. 학력, 경력 제한 없음

9.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
-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다.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부
- 라. 건강보험증 1부
- 마. 재산세 등 세금완납여부 확인(※ 면에서 자체 확인)

10. 채용방법

-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채용인원보다 인원이 많은 경우 실시)

11. 시험일정

-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05. 22.(월) - 개별통지
 - 나. 면접시험(인원초과 시) : 2023. 05. 24.(수) - 일정변경 가능
 - 다. 합격자 발표 : 2023. 05. 24.(수) - 개별통지
- ※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와 근무 기간 변동 가능

12. 근로기간 : 2023년 5월 ~ 예산소진 시 까지

13. 임금 및 근로조건

- 가.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18:00)
- 나. 휴게시간 : 12:00 ~ 13:00(1시간)
- 다. 임 금 : 76,960원/1일(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적용)
- 라.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 1일 유급휴가 부여(근로 시 휴일수당 가산 지급)
- 마. 1월간 계속참여시 1일의 연차유급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 추가지급
- 바.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14. 종사업무

- 가. 주요도로변 가시권 침 등 덩굴류 제거
- 나. 소공원 내 침 등 덩굴류 제거
- 다. 기타 산림업무 및 행정지원 활동

15. 기타사항

- 가. 응시원서 등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선발된 후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구비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

취소됩니다.

라. 지정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근로자 본인이 해결하여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하동군 금남면 산업경제담당부서(055-880-62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가시권 덩굴류 제거반 기간제근로자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주 요 이 력 사 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 격 면 허	1.			교 육 이 수	교 육 명		교 육 일 수		비 고	
		2.				1.		주			
		3.				2.		주			
	3.			3.		주					
	병역	①필	②미필	③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혼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인 (*인)	
	취업 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 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업 일용직, 주부, 기타			
신장	Cm		체중	Kg		교정시력	좌(), 우()		색맹	유무	
기타 사항	주 거 상 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 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경 력 사 항	① ② ③										
기타 사항 기술 (본인)	차량 소유여부 (○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여부				기간 및 참여사업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산림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23년 월 일
금남면장 귀하

[붙임 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본인은 하동군 2023년 가시권 덩굴류 제거반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고, 이후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함에 밝혀질 시,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3년 월 일

위 확인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